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제정 (2007. 10. 8.)

1차 개정 (2012. 3.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교통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기타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출원·등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출원이 예상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의 생략) 직무발명의 출원·등록·계속보유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용역 과제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여부 및 출원·등록·계속보유 여부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속보유의 포기) ① 등록 후 5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계속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포기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발명자에게 양도된 특허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실시료의 비율은 규정 다음과 같다.

1.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5를 지급한다.

제6조(외국 특허 출원비용 등의 지원) ① 외국 특허의 출원·등록·계속보유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매분기마다 사전에 신청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② 분기별 지원 대상의 수 및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복수 발명자의 실시료 분배)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실시료를 분배한다.

제8조(징계조치)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원회는 총장에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